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1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이호대, 정재웅, 이태성,
한기영, 홍성룡, 오한아,
고병국, 이은주, 이승미,
이정인, 박순규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는 등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대도시권 광역행정권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같은 맥락으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

-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강조가 필요함. 이에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가.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신설 (안 제3조제7호)
- 나.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신설 (안 제3조제8호)
- 다.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신설 (안 제3조제9호)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8.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9.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u>
<u><신 설></u>	<u>8.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u>
<u><신 설></u>	<u>9.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u>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수도권지역 대중교통서비스 연계성 강화 등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7~9호에서 시장의 신규책무로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서비스 연계성 강화,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